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구획 443.1- 전화번호 725-6290	전 권 국 경 4 조 1 항 부 시 장 권 권 4 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결재 1984. 10. 18 부시장	
보존연한	영 구	
보	부 시 장	전 경
조	도 시 개 획 국	공 고 제 193
기	구 획 정 리 과	영 동 시 개 획 과 장
관	관 지 개 획 과	영 동 시 개 획 과 장
기안책임자	관 지 개 획 과 최왕식	'84. 7. (서외위) 영 동 시 개 획 과 장
경 유	과 안 참 조	시 장
수 신		결재 1984. 10. 25 부시장
참 조		
계 목	영동1지구 및 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완지처분(공공)	
(제1안) 내부결재		
1. '69. 11. 28(건공 제120호) 및 '71. 12. 28(건공 제119호)자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에 있는, 영동1지구 일부 및		
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완지확정처분에 따른 완지계획		
변경 토지 서공 제206호('84. 4. 11)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공고한바 있는 토지의 확정측량 및 공사를 완료하고 완지처분에 따른 작업이		
완료되어 청산금이 결정 되었기 별첨 확정도서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완지처분토지 합니다.		
가. 사업명 : 영동1지구 및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예산과목 : 영동토지 사무비, 사무관리, 수송비 및 수수료		
다. 예산액 : 1,522,660 원(4단×11,275,730×1.1×2.4, 522,660)		
라. 지출방법 : 신본공고후 청구에 의함.		
첨부 완지확정 지정서 1부.		

제 목 : 영동1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환지처분

◦ 면 적 : 991,736^{m²}

◦ 필 수 : 필

◦ 추진경위

. '69.11.28 : 구획정리사업인가(총26,764,87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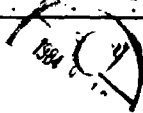
. '81.12. 5 } 일부지역 환정처분 3회

'82. 9.20 } (15,147,082^{m²})

. '85. 3. : 잔여지 환정처분 예정(1,617,053^{m²})

186-1

고 고 안	375/11 2222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환지처분 공고	전 설
<p>1. 우미시가 '69. 11. 28, '71. 12. 28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사업시행한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하겠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p>	
<p>2.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이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울특별시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 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공고로 갈음합니다.</p>	
1984. 9. 26.	
서울특별시장 영 보 언	
- 다 음 -	
가. 사 업 명 : 영동1지구 및 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환지처분대상위치 : 강남구 양재동, 도곡동, 석촌동 사당동, 방배동 일부	
다. 환지처분면적 : 991,736㎡	
라. 관계도시의 업무	
1) 환지처분 내용 : 지번, 지목, 지적 중감에 대한 관계 도면은우미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열람	
2) 청산금 : 우미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서 열람	
<p>마. 공부정리 :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에 의하여 변경 되었으므로 변경된 사항을 우미시에서 공부를 정리할 것이나 정수청산금 납부 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 즉시 정리 되어 체비지 소유자는 우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이권등기접작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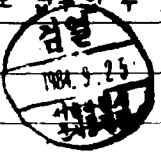
부사

취하시기 따따(구비서류 : 예도종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소정양식) 예비
저 계약서 및 영의변경 승인서, 확정된 토지대장등본 1부, 예도종서 및
위임장 각 2부).

다. 청산금의 징수교부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외 토
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공부의 얼마후 이 법도로 통지할 것이나 징수청산금은
받입고지 이전이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안)

수 신 수신처참조



제 목 같은건

1. 우미시가 시행한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괴하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범침 공고본 사본과 같이
한지확정 처분 하엿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하
니다.

따로붙임 : 공고본 사본 및 한지확정 지정서 1부.

수신처 : 범침한지확정지정서 소유자 명단.

(제4안)

수 신 강남구청장

1589



제 목 같은건

1. 우미시가 시행중인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본 사본과 같이 한지확정처분 하엿기
통보하니 다음사항을 조치 하기 바랍.

가. 따로붙임 공고본 사본과 같은 내용을 귀구청 및 해당동사
무소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일것이며,

나. 신구지번 대조 도서는 해당 동사무소 및 관계기관에 배부
할것.

다. 범침 한지확정 도서를 도시경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1205-25(2-2)(을)
1981. 12. 18승인

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
조 단 질 (1,500,000배 인 세)

<p>된 이에 관계이여게 영판어 공압것.</p>	
<p>다. 본관저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발급하고 있는 현지 예정지 증명은 발급 중지하고 현지확정 증명으로 대적하여 신동영, 거면, 지역 지적 및 권역변적을 영거하고 "구획정리 정산금 확인요양" 및 소유권 이전 "재산권 영사 등기는 별도 자세한 내용 확인요양"이라고 표시하고 기타 도시계획 사항을 표시함것.</p>	
<p>따로붙임 : 1. 공고본 사본 1부.</p>	
<p>2. 현지확정 지정서 및 도면 1부.</p>	
<p>3. 신규지번 대조표 5부.</p>	
(제5번)	1390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업무 보고
<p>1. 우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본 사본과 같이 현지확정 책본 하였 기 보고 합니다.</p>	
<p>따로붙임 1.공고본 사본 1부.</p>	
<p>2.획지도 1부.</p>	
(제6번)	1571
수신	서울민사지방법원장
참조	강남동기소장
제목	현지처분 통지
<p>1. 우미시가 시행하는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현지 처분 공고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여 드미니 업무처리 (현지축막등기사까지일반등기 중지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19-5

따로붙임 1. 신구지번 대조표(지역환경영세서)1부.

2. 공고본 사본 1부.

(제7안) 155

수신관: 1994.9.25

제목: 환경영세서(신구지번 대조표) 공고본 사본

1. 우리시가 상행한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추가토지구획정미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본 사본과 같이 한지처분 되었음을 토지구획정미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의하여 통보 하오니 귀소관 재산외 관리 및 업무 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고본 사본 1부.

(제8안) 1513

수신행정과장: 1994.9.25

제목: 같은건

1. 우리시가 상행한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추가토지구획정미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본 사본과 같이 한지처분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고본 사본 1부.

2. 신구지번 대조표 1부.

(제9안) 1514

수신도시계획과: 1994.9.25

제목: 같은건

1.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추가토지구획정미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본 사본과 같이 한지처분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수행상(청산후막동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한지확정 지정서(체비적)1부.

(제10안)

수신공보가

제1부 권15호 게재



1. 아래와 같이 권15호 게재될 신문광고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나. 게재건명 : 영등1지구 일부 및 영등후가지구 한지서분
공고

다. 근거법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5항

마. 신문 게재단형 : (3단×10.4×17, 140×1.1×2)

바. 게재신문 : 2개일간신문(조건 및 석간)

따로붙임 : 공고문 사본 6매 붙.

